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1월 07일 18시 59분



목차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문화예술과 | 3 |
| 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 | 3 |
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
작성일 2023.04.12 10:07 조회수 332 수정일 2024.06.26 00:00

- ✓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- ✓ 민원내용 비디오물 제작, 배급업 변경신고
- ✓ 관계법령 『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
 - 신청서
 - 신고증
- ✓ 구비서류
 -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- ✓ 처리부서 문화예술과
- ✓ 협의부서
- ✓ 접수 민원지적과
- ✓ 수수료 조례
- ✓ 처리기간 3일
- ✓ 기타사항
- ✓ 흐름도
 - ① 민원인신청 →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→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→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→ ⑤ 현지확인 → ⑥ 기안·결재 → ⑦ 등록증 작성 → ⑧ 민원인 교부
- ✓ 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 [별지 제28호서식] 비디오물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1293 hit/ 18.5 KB) ↓[미리보기](#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